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5. 11.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1. 28.

도시환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고명욱 의원 등 17명(박종길, 임미연, 권숙자, 도하석, 장호섭, 남현주, 정순옥, 손범구, 서민우, 박왕규, 박정환, 서보영, 이선주, 김해철, 강한곤, 김정희)
- 발의일자: 2025. 11. 14.
- 회부일자: 2025. 11. 14.
- 검토기간: 2025. 11. 14. ~ 11. 21.

2.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운영에 있어 중대한 공유재산 처분 시, 서면심의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절차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서면심의에 관한 명확한 규정(안 제4조)

4. 참고사항

- 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5. 11. 14. ~ 11. 26.):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의 가능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시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 사안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의를 허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공유재산심의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실질적 검토 기능을 강화하여 달서구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각 호 기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심의로 처리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